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30일, 신동욱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3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2. 25.)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2. 8.)

상정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2. 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2. 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신동욱의원)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등 온라인상에서의 불법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정보 등을 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제3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경제적 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을 가중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이러한 비방에는 경제적 이익의 획득뿐만 아니라 타인의 평판 훼손 등 다양한 목적이 존재할 수 있는바, 이 중 경제적 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명예훼손이 다른 명예훼손에 비해 특별히 더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별법상 형의 가중에 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주로 ①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 ② 경제범의 경우에 범죄로 획득한 이익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③ 보호·감독의무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을 상대로 죄를 범한 경우 등에 형의 가중을 규정하고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